

대학원 전과 운영내규

제정 2019. 12. 26.

제 1 조 (목적)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8조(전과)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 “전과”라 함은 학생이 동일 대학원내 다른 학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3 조 (신청 시기 및 절차) ① 전과 신청 시기는 매 학기 개강 1개월 전 시행한다.

②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과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입하려는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학과장은 전입 희망자 의견서 및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.

제 4 조 (신청자격) ① 전과 신청은 재학생과 복학예정자로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제2학기 또는 제3학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(단,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전과할 수 없다)

② 전과는 소속된 일반대학원 또는 각 특수대학원 내에서만 가능하며, 다른 대학원 학과로의 전과는 신청할 수 없다.

제 5 조 (전과심사 및 기준) 전과심사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과별로 정하여 실시한다.

제 6 조 (전과허가 및 취소) ① 대학원장은 각 학과에서 제출한 전과 신청서를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진행된 경우 전과를 허가한다.

② 전과 신청한 학생이 진행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전과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 7 조 (교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 등) ①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은 전입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전과 이전 이수한 학점은 전입한 학과 교육과정에 의거 학과장이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③ 학점인정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 이수학점은 전입한 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 8 조 (학적사항) ① 전과한 자의 학적변동사항(휴학, 복학, 학사경고 등)은 전과하기 이전 학적변동사항을 통산한다.

② 학번은 입학당시의 학번을 사용한다.

③ 전과자는 전입한 학과의 학문계열에 따라 책정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제정내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